

『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8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8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9월 7일

제2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권 순 서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2018년도 구미시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구미시의회에 그 동의를 얻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
○ 출연예정금액 : 58,551천원

○ 출연내용

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.5/10,000를 법정 출연함.

○ 출연필요성

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지자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과 제도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노력하고, 또한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에 해당

○ 법적근거

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

라. 참고사항

○ 첨부서류(별첨)

- 출연개요
-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- 출연기관 현황
- 출연 사업계획서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

○ 예산조치 : 2018년도 예산편성(58,551천원)

○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근 도

○ 본 『구미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』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출 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-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비로써 법령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